개정세법소식

제 4 호
2015년 12월 8일

(100-160) 서울시 중구 퇴계로28길 8, 만수빌딩 201호 www.tax007.co.kr TEL:2279-0246/0224 FAX:2279-0240

2016년 적용되는 개정세법

2016년 적용할 세법이 2015.12.2.(수)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된 세법 내용 중에서 실무자가 당장 적용하고, 알아야 할 내용만 정리하였습니다. 개별회사에 적용되는 특수한 세법의 개정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지하식세무회계사무소(www.tax007.co.kr)로 문의하시거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hometax.go.kr) 또는 법제처(www.law.go.kr)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법인세법

(1) 2016년 이후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를 통해 입증된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하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1대당 1천만원(감가상각비+유지비+리스비도 감가상각비)까지 인정함. 감가상각비는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초과금액은 이월하며 계속 감가상각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

2. 소득세법

(1) 이번 2015년도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이 있는 기본공제대상자의 판정에서 소득금액이 아니라 급여액 500만원이하의 자는 공제대상자가 되도록 소득금액의 판정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2) 고액기부금에 대하여 2천만원까지는 15%로 초과분에 대하여는 30%를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3)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이 10%에서 20%로 인상되었고, 의무보호예수중(6개월)인 경우에는 10%가 적용됩니다.
(4)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개인이 10년이상 보유시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며, 개인, 중소법인에 대한 중과유예가 종료되었습니다.
(5)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2016년은 성실신고확인사업자, 2017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하여 적용하고,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은 개인사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1)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여 중소, 중견기업은 1인당 500만원, 대기업은 200만원으로 증가인원당공제세제를 적용합니다.
(2) 개인종합자산과리계좌 특례를 신설하여 근로자, 사업자, 농어민이 5년이상 의무가입기간을 유지하는 ISA계좌를 통한 운용수익에 대하여, 총급여 5,000만원과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25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이외의 자는 200만원을 비과세하며 초과분은 9%분리과세하도록 함.(직전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가입에서 제외됨)
(3)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하여 법인대표자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이면 소득공제가 허용되도록 하였습니다.
(4) 조합 등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이 3년(2018.12.31.) 연장되었습니다.

4. 부가가치세법

(1) 법인사업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공급가액의 35%까지 201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2) 연매출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배제됩니다.

5. 기타

(1) 1세대1주택으로서 10년이상 동거하여 상속되는 경우에 동거주택상속공제가 기존 40%에서 80%로 인상되었습니다.
(2) 미성년자의 세대생략할증과세에 대하여 20억원 이상시 기존 30%에서 40%로 인상되었습니다.
(3) 직계비속이 존속에게 증여시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6촌이내의 혈족 등의 경우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4)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기한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5) 조세포탈범의 명단공개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하되었고,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지하식세무사의 잘나가는 사장님 절세공식, 어울림, 2013.1.15"의 인세 전액의 2배가 사회연대은행과 열매나눔재단의 사회적기업사업에 기부됩니다.